

酒類產業政策과 產業發展方向



정 현 배

〈중앙대 경영학과교수·경영학박사〉

■ 目 次 ■

- I. 서 론
- II. 우리나라 주류시장의 역사적 고찰
- III. 우리나라 주류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 IV. 세계 주요국의 주류산업 관련정책
- V. 우리나라 주류산업의 발전적 육성과제
- VI. 우리나라 주류산업의 발전적 개편 방안
- VII. 결 론

I. 서 론

과거부터 정부의 엄격한 통제제도 시행과 신규면허의 억제 등의 정책의 결과로 과잉통제가 오히려 과잉 보호적 효과를 낳아온 주류산업은 최근 전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 요구되는 경제제도 민주화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정부가 각종의 산업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편해야 할 부문의 하나로서 부각되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자칫 소외되기 쉬운 업계의 입장과 국민적 입장은 정부의 종합적 정책 입안 및 실천기관으로서의 입장과 균형있게 대비함으로서 주류산업의 성격과 그 구성요소들간의 상호관계를 규명하고, 국민, 주류업계 그리고 정부의 의견을 가능한한 객관적이고도 논리적으로 정리·제시하여 앞으로 있게 될 우리나라의 주류산업 개편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다.

II. 우리나라 주류시장의 역사적 고찰

1. 주류산업 관련정책 변동추이

酒類產業 關聯政策 立案의 主務部署로는 農林水產部, 財務部, 國세청, 경제기획원, 보건사회부와 내무부 등의 다양한 政府部處들이 관여하고 있으나 이를 정책분야별로 大別해 보면 公正去來, 租稅, 產業育成, 소비자 보호적인 次元으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다.

1.1 公正去來 關聯 政策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주류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은 酒類의 製品的 및 市場的 特性上 특수한 체제를 가질 수 밖에 없으며, 정부에

의한 生産, 流通, 消費 체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한은 必要惡으로 看做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81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후 각종 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여부가 공식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다. 주류산업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의 제정 정신에 입각한다면 일종의 카르텔화 되어 있는 주류산업을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절대적이나, 주류산업이 국민의 정신적, 신체적 보건위생에 깊이 관련된 산업이므로 시장에서의 완전자유경쟁 실천이란 명실공히 어렵다는 상황과 더불어 막대한 稅源이 되므로 이에 대한 통제 약화 또한 쉽게 적용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현행 주세 관련법은 사실상 공정거래법에 비해 정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특별법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공정거래법이 진정한 취지를 살리려면 이의 취지에 위배되는 他法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特別 規程을 삽입해서 통제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1.2 租稅 關聯 政策

우리나라에 있어 酒稅는 역사적으로 볼 때 간접세의 主種을 이루어온 稅目으로서 지금은 相對的인 比重이 떨어지기는 했으나 아직도 간접세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① 酒稅法의 변천과정과 내용

우리 나라의 酒稅法은 그 시초를 1908년 주세법의 공포에서 찾을 수 있으며, 1950年代 以降 주세법의 변천과정과 내용은 〈表 II - 1〉과 같다.

② 酒稅政策의 변천과정과 내용

우리 나라 주세정책은 酒稅法의 주무관찰부서인 재무부에 의한 정책의 개발 및 실천보다는 사실상 실무부서인 국세청에 의해立案實踐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주세정책은 주세의 공정과정과 보전을 위한 일련의 행정 명령으로서 그 골격을構成해 왔는데 酒稅政策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表 II - 2〉와 같다.

〈表 II - 1〉 주세법의 변천과정과 내용

年 代	주 요 내 용
1950年代	• 전쟁의 수행과 전후의 부흥사업에 따르는 재정수요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稅收增大에 기본목표를 두고 개정을 함.
1960年代	• 경제개발 5개년계획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세수확보를 위하여 세차례의 세율인상과 비곡류원료사용에 의한 생산을 적극 장려함. • 국세청 신설(1966年)
1970年代	• 각종 주류 단체의 대폭정비와 대단위 조치로 설명되는 행정적 대개혁 단행. • 주조사제도 신설
1980年代	• 70年代 주세정책의 기조를 거의 그대로 이어서 실시

1.3 산업육성정책

주류산업은 국민보건 위생차원에서 주류산업의 통제를 주장하는 소비자 보호단체의 입장과 세수증대를 위하여 주류산업의 育成을 주장하는 生產業者의 입장이 상당히 대립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따라서, 주류산업 육성 정책은 산업통제와 산업육성의 이율배반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우리나라에 있어서 주류산업 육성 정책의 변천

〈表II-2〉 주세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分類	酒種分類	現況	問題點
1. 酒税率	酒類	○酒類를 18종으로 분류하여 10% ~150% 범위에서 酒税賦課	○税率이 外國에 비해 높은 편이므로 輸入開放政策이 적극 도입되면 國內酒類業界 경쟁력 弱化
2. 酒税賦課方法	酒類	○종가세	○純酒價의 小幅變動에도 價格引上이 높다 ○내용물과 包裝物이 함께 課稅되므로 製品販賣價格이 높아 消費者負擔加重 ○製品開發制約
	酒精	○조주정수입시 酒稅를 先納하여 결감주세(2%)를 포함 納付	○資金壓迫 ○業務번잡
3. 酒税徵收方法	酒類	○賦課時點：製造場 出庫時 納付時期：前月 출고분을 翌月 20일까지 納付	○出庫日로부터 대금이 회수되기 이전에 酒稅納付日이 도래하므로 과중한 資金부담 발생
	酒類	○流通過程上 破損된 製品에도 課稅	○税金負擔
4. 기타사항	酒精	○① 조주정 통과시： 酒 稅 : 49,875/kℓ 당 防衛税 : 주세의 30% 教育税 : 주세의 10% ② 酒精販賣時 酒 稅 : 49,875/kℓ 당 防衛税 : 주세의 10% 教育税 : 주세의 10% ③ 防衛税, 教育税 還給申請	○左記와 같은 절차로 문제점 발생 1. 행정절차의 복잡 2. 자금압박 : 3~4개월 후 환급 3. 조주정은 製品이 아님에도 통관시 酒精稅金 先納
	酒精	○조주정을 원료로 하여 주정을 제조하는 경우 주세법 제27조의 2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조된 주정에 대한 주세만 공제	○不純物 제거 등 제조결감은 공제 받지 못함
	酒精	○주정의 DM 당 가격이 소수점 이하까지 형성	○行政 및 計算의 복잡화, 電算業務에 차질
	酒類	○가격제한	○정부가 가격을 주도함으로써 자유경쟁에 저해 ○신제품개발 및 포장개선 불가능
	酒類	○포장, 용기, 상표제한	○40년동안 포장, 용기의 불변 및 혁신한 포장으로 인해 외국인에게 저품질로 오해 우려
	酒類	○주류는 양조주, 증류주, 재제주로 분류하여 18종으로 나눈다	○분류체계의 복잡성 및 획일성 ○과세의 어려움

〈表II-3〉 酒類產業育成政策의 變遷過程

년도	주요사항	내용
1970年代 全般	輸入代替原料並用의 常例化	國產原料의 절대량 부족으로 원료대체마련. 年間原料使用時期를當年度產 생고구마 專用時期(매년 10월 1일부터 년말까지)와 前年產 切干 고구마 및 수입대체원료의 並用時期(1월부터 9월까지)로 양분
1973年	주류업체 통폐합	군소주류업체의 과당경쟁방지 및 酒質低下 방지를 위하여 도단위, 지역별로 대단위화함.
1976年	소주의 50% 自道酒 購買義務化	酒類都賣業者는 소주 월간구입 총액의 50% 이상을 당해 도 매상 소재 지역으로부터 구입하도록 함
1982年	소주의 50% 自道酒購 買義務制 부분적 해제	소주업체 중 全國市場占有率 10% 미만 소재지역만 50% 자 도주 구매의무 존속시킴
1985年	공병보증금실시 ³⁾	맥주에 이어 소주에도 실시

과정은 〈表 II-3〉과 같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 주류산업에 적용된 정책은 정부차원에서 산업을 지나치게 지도, 통제해 왔기 때문에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산업 육성보다는 산업정책 현상이 초래되었고 일부 기업들에 의한 독과점 현상이 심화되게 하였다.

1.4 소비자 보호정책

주류는 적정소비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과음하게 되면 오히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유해하게 되는 등 부정적 성격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사회공공기관, 주류제조회사는 주류소비에 수반하는 각종 위험을 충분히 소비자에게 인식·계몽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노력이 주류 소비자 보호운동의 실체를 형성하며, 그 대상은 주류 소비자뿐 아니라 주류 비소비자까지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의 주류소비자 보호 정책은 공해방지 설비의 의무화, 부당표시와 허위·과장 광고의 규제, 불량주류의 단속 등 정부·민간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어느정도 인식되어 각종 활동이 전개되어 왔으나, 그 보호체

계가 혁실했기 그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도 소비자보호정책의 부재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

2. 주류시장구조의 변동추이

우리나라 주류시장 구조는 역사적으로 볼 때 산업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정부의 관여보다는 행정 지도적인 차원에서의 정부의 관여가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현재의 시장상황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책들이 역사적으로 시장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 왔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생산시장, 유통시장, 소비시장 및 주류협회조직의 변동추이를 중심으로 주류시장 구조의 변동추이를 살펴보자 한다.

2.1 주류 생산시장의 변동추이

① 생산량의 변화

국내 주류제조업체들은 70년대 들어 지역 카르텔제도를 근간으로 한 영세 택주·소주업체정리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보호정책에 의해 산업적 성장기반을 조성하였다. 주류 생산량은 국가

경제의 성장에 따라 탁주와 청주의 수요는 점차 줄어왔고, 소주와 맥주는 상대적인 伸張勢를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소주生産量의 증가와 더불어 주정생산량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② 제조업체의 변화

'73년 주류업체들이 통폐합 정비됨으로 소주 및 주정생산업체 수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으나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신규면허의 불허로 주류제조업체에 있어서 실질적인 업체 수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③ 생산관련제도의 변화

제조면허는 1973년부터 착수한 주류제조장 통·폐합이후 주류의 수급상 차질이 없는 한 신규면허는 불허한다는 원칙하에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부분적으로만 허용되어왔다. 주류생산 수급 조절은 주조원료의 배정과 바로 직결되는 것으로 1973년에 세수확보, 국민보건, 자원관리 측면에서,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주류유통질서의 확립과 주류산업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 조절되어 왔다.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주정공판매제는 소주 및 기타주류생산의 원료가 되는 주정생산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 설립되었는데 이에 따라 주정제조업자는 생산된 주정을 全量 대한주정판매(주)에 판매해

야 하며, 주정사용자는 全量을 주정판매회사로부터 구입할 수 밖에 없는 독점적 체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2.2 주류유통시장의 변동추이

우리나라의 주류 유통시장은 都賣業과 小賣業으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장구조는, 다시 法的, 제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제도권 유통시장(表 II - 4 참조)과 시장환경에 따라서 임의 구성되고 활동되어지고 있는 비제도권유통시장(表 II - 5 참조)으로 나눌 수 있다.

2.3 소비시장의 변동추이

우리나라의 주류 소비량은 충출고 가격으로 볼 때 '80년에 823,138백만원이었으나, 7년이 경과한 '87년에 1조 524,673백만원으로 무려 2배 가까이 술 소비량이 늘었으며, 주류별로는 소득수준의 증가와 더불어 소주, 맥주, 위스키, 과실주, 기타 재제주 등 現代酒는 성장 추세이며, 탁주, 인삼주 등 전통주는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주류소비에 대한 소비자보호운동은 1987년 한국소비자 보호원이 설립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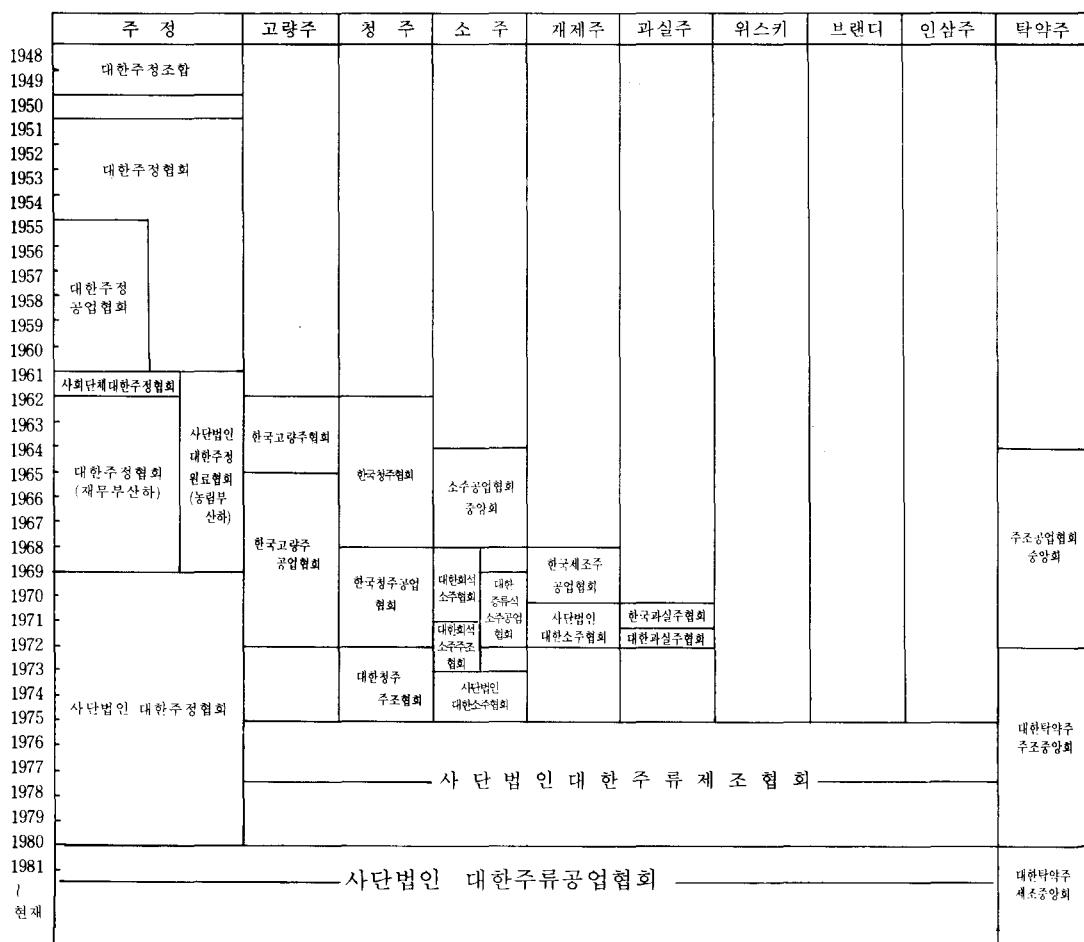
(表 II - 4) 제도권 유통시장

구 분	내 용
유통관련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면허제도 : 1976년 통·폐합 이후 도매업의 신규면허는 원칙적으로 不許하고, 소매업의 경우는 전면적으로 허용 ㄴ. 주류유통행정 : 1960년대에는 주로 부정주류법칙 단속활동에 주력하였으며, 70년대에 들어 주류의 부정거래규모가 대형화되고 조직적, 지능화 됨에 따라 주류산업에 대한 통합·정비 등을 실시함.
도매업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탁·약주도매업 ㄴ. 일반주류도매업 ㄷ. 국산양주도매업 ㄹ. 수퍼·연쇄점 仲介業
소매업구조	일반 소매업과 접객업 등의 의제판매업으로 구성됨

〈表 II - 5〉 비제도권 유통시장

정 의	주세법상의 면허제도의 테두리를 벗어나 변칙적인 영업을 하는 형태
생 성 원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유흥업소 등에서 탈세를 위한 무자료 주류의 확보노력 ㄴ. 제조장에서의 밀어내기식 강매와 끼워팔기식 강매 ㄷ. 덤핑판매를 통한 신속한 현금 확보
통 제 정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수퍼·연쇄점에 대한 출고중지 ㄴ. 소매업소에 대한 주류구입 한도액 지점 ㄷ. 주류의 용도별 구분표시제와 소주병색깔 구분제 ㄹ. 불상실 납세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

〈그림 II - 1〉 주류업 단체의 변동추이



도 그 체제나 내용에 있어 활동이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민간단체에 의한 소비자보호운동은 여성단체가 위주가 되고 있으며 국가 보조금이 적기 때문에 그 활동내용이 더욱 취약한 편이다. 기업에 의한 소비자보호운동 역시, 아직은 구호에 그치고 있으며, 행사내용도 도내 행사, 체육행사에 대한 지원 등이 고작이며, 최근들어 일부업체에서 의료시설의 확충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2.4 주류협회 조직의 변화추이

우리나라의 주류관련협회의 효시는 1948년 설립한 “대한주정조합”이었으며, 1951년 2월에 “대한주정협회”로 개편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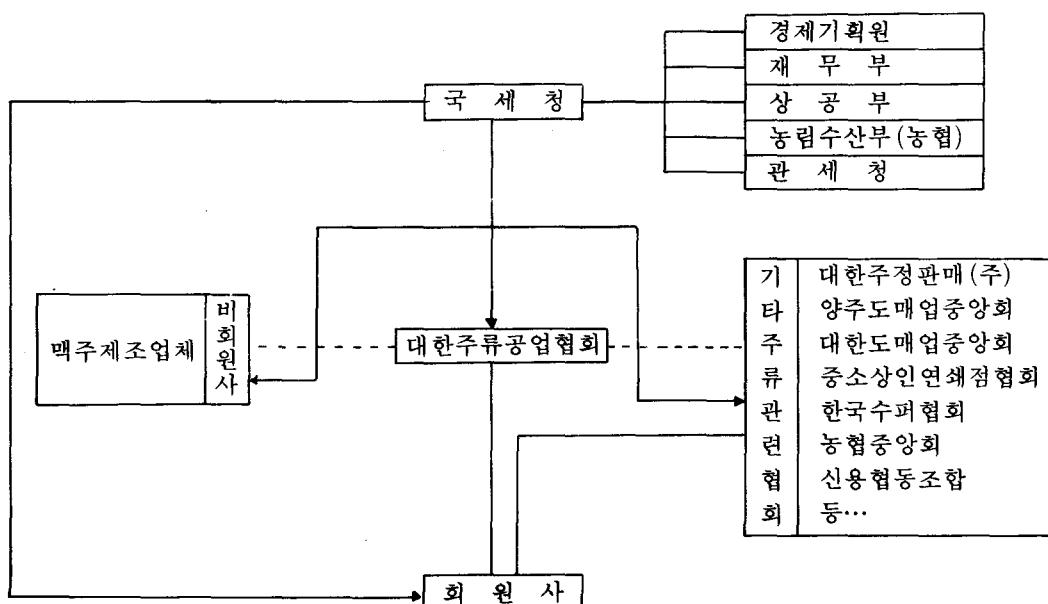
이후 많은 변화를 거치다가 1980년 9월에 이르러 정부의 각종 조합, 협회운영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에 따라 유사한 중복 기능을 가진 단체들을 통·폐합하고 기구 및 인원을 감축

키로 한 계획아래 주정업계의 대한주정협회와 주류업계의 대한주류제조협회를 통합하여 1980년 11월에 대한주류공업협회를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의 주류업단체의 변동추이는 <그림 II - 1>과 같다.

현 대한주류공업협회는 주류공업의 건전한 발전과 주세 보전 및 회원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회원 사업에 관하여 국가시책에 협조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협회의 회원사는 55개 종류의 주류생산 면허를 가진 38개 법인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맥주회사와 타·약주제조회사는 현재 이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협회와 대외기관관계는 <그림 II -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정부와의 관계를 보면 국세청의 관할아래 지도 육성되고 있으며 타부서와는 국세청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주류산업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II - 2> 주류공업협회와 대외 활동관계



III. 우리 나라 주류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1. 생산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 나라 주류생산 시장의 현황은 주정시장, 양조주시장, 중류주시장, 재제주 시장의 4 가지로 나누어 볼 때, 그 개괄적인 내용은 <表 III-1>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주류생산 시장제도는 업계의 자유경쟁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형태가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부당국이 제도적이고 통제적인 시장개입을 해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국세청에 의해 관리

되어 온 “주세사무처리규정”에는 주류생산 및 시장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면허, 생산수급, 주정공판제도 등으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다.

① 면 허

주류를 제조하고자 할 때에는 제조한 주류의 1종류에 한하여 제조장 개수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주세 사무처리 규정에는 면허의 증감에 있어 특별한 예외규정 외에는 주류의 신규제조면허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② 생 산 수 급

주류의 생산수급계획은 국세청장이 매 주조년도 초에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즉, 주정은 국세청장이 주정의 수급을 감안하여 당해

<表 III-1> 주류생산시장 형태 및 현황

시장의 형태	현 황
주 정 시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개 업체가 생산량을 분할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은 진로발효(주)를 제외하고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 주정의 원료배정 및 생산량은 매년 수급계획에 의해 정해지므로 시장점유율의 변화가 거의 없다. • 년간 최대 생산능력 : 176만 D/M 87년 실제 생산량 : 94만 D/M 88년 생산 배정량 : 106만 D/M 전체가동율 : 62%
양 조 주 시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맥주와 탁주가 전체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함. • 탁주 : 제품의 특성상 저장성이 약하고 상품의 선도유지가 곤란함으로 1962년부터 공급구역제를 실시하고 있음. • 맥주 : 동양맥주와 조선맥주가 년간 1~2% 정도의 생산량 변화를 보이며 거의 6 대 4의 비율로 전형적인 생산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음.
중 류 주 시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주 : 10개의 주조회사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제조업체의 전년도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당해 주조년도의 주정량을 배정하여 왔으므로 시장지분 분할에 있어 업체간의 심한 불균형이 10여년간 전혀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 위스키 : 주류업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점차 술에 대한 소비자들의 취향이 급속도로 고급화되고 있다는 추세에서 보면 잠재력 있는 시장이라 할 수 있다.
재 제 주 시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재제주와 인삼주로 대별될 수 있으며 이중 기재주가 재래주시장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다.

년도의 주정 수요량을 책정하고 이에 따라 주정생산량 및 소요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지정하고, 주류는 주류별로 수급을 감안하여 당해년도의 주류별 제조량 및 소요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출용 주류는 예외이다.

③ 주정공판제도

주세사무처리 규정에서는 주정판매업의 면허수급을 더 이상 허용치 않고 있으며, 주류제조자가 생산한 주정도 전량 주정판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의 대한주정판매(주)의 주정판매 독점권을 인정하고 있다. 더우기, 주정판매회사의 자본지분 중 83%정도를 세우회가 소유하고 있어 이 회사의 경영방침은 명실공히 세우회에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산시장의 문제점은 〈표III-2〉에서와 같이 주세사무처리 규정상에 나타나는 각종 규제에 기인한 것과 주류생산 시장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대별될 수 있다.

〈表 III - 2〉 생산시장의 문제점

구 분	항 목	문 제 점
주세사무처리 규정상의 문제점	1) 신규참입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신규참입 자유원칙에 위배 • 기존업체의 독점화 심화 • 기술혁신 및 국제 경쟁력의 약화
	2) 제조장별 주류종류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투자와 원가상승 초래
	3) 제조방법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의 제약과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 제한
	4) 원료배정 및 생산량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활동의 자율성 배제 • 제품의 다양화에 역행 • 업체의 창의성 무시
	5) 주정공판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정판매 단계에서의 경쟁이 전무한 상태 • 수요자의 주정 선택권 제한
주류생산시장 구조상의 문제점	1) 기업간의 담합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참입의 기회 봉쇄
	2) 시설에 대한 과다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비 지출의 부담과증
	3) 제조업체들의 경영관리 화 노력 취약	
	4) 수출경쟁력 약화	

2. 유통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주류 유통시장의 현황은 국세청에 의해 실되고 있는 여러 관계 규정에 의한 유통제도적 측면과 주류의 현실적 유통구조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되어 질 수 있다.

① 유통제도

우리 나라의 현행 주류유통제도는 전반적으로 국세청에 의해 통제조정되고 있으며, 국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가지 제도와 관계규정의 기본방향도 유통질서의 확립과 세무행정의 효율적 수행으로 축약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류유통제도의 현황은 〈表 III-3〉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表 III - 3 〉 酒類流通 關聯制度

항 목	내 용
면 허 제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新規參入不許
판 매 지 역 제 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酒類 都賣場數의 制限 • 都賣業 事業範圍 區分 • 一般酒類都賣業은 稅務署長이 지정하는 供給區域內에서 酒類販賣
주류의 용도별 표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퍼·연쇄점 본·지부의 供給區域은 시·도의 行政區域내에서 사전에 地方國稅廳長과 협의하여 稅務署長이 指定한 場所 • 주류를 용도별로 「음식점용」, 「가정용(소매점)」, 「가정용(수퍼·연쇄점)」, 「면세점용」으로 구분 • 병마개에 納稅標識
납 세 표 식 제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주류 도매업자는 소주 월간 구입액의 50% 이상을 당해 都賣場 소재 시·도내에서 제조된 것을 구입
소주의 자도주 50% 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주류 도매장에서 동양맥주와 조선맥주를 동시에 취급 판매
맥 주 의 혼 판 제 도 불 성 실 신 고 자에 대 한 정 밀 조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상의 연쇄화 사업운영 요령 규정
시 장 법 제 14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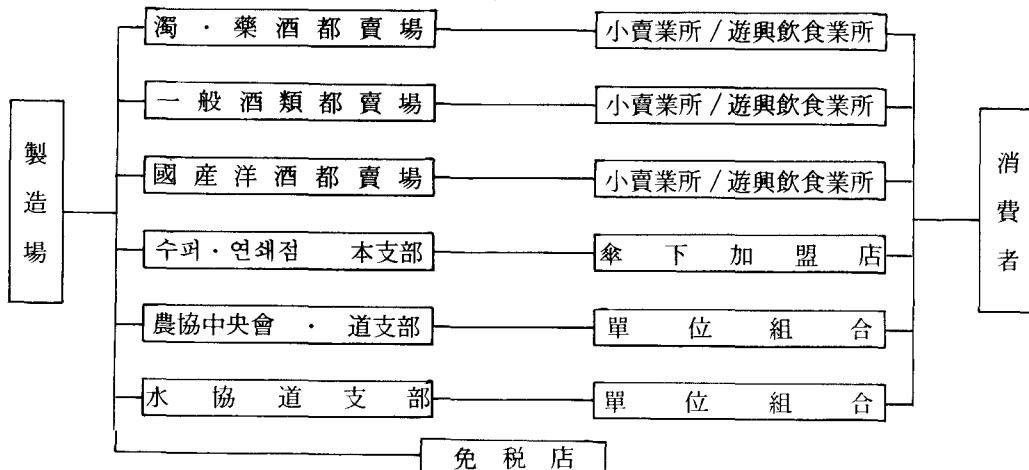
② 유통구조

우리 나라 주류의 유통구조는 <그림 III-1>과 같이 턱·약주 도매장, 일반주류도매장, 국산 양주도매장, 슈퍼·영쇄점 본 지부, 농협중앙회, 도지부, 수협 도지부 등의 도매업구조, 일반소매업을 지칭하는 소매업구조, 그리고 광의의 개념속에 소매업 구조에 포함되며, 주류 판매를 主業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

장으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식료잡화점, 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를 말하는 의제판매업구조로 나누어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주류유통시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유통창구의 다원화와 이로 인한 조세파악이 안되는 무자료 주류의 유출이다. 이것을 유통관련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시장의

〈그림 III-1〉 주류유통 구조도



(表III - 4) 流通市場의 問題點

區 分	項 目	問 題 点
시장제도상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新規免許 및 販賣地域制限 • 燒酎의 自道酒 50%購買 • 酒類販賣의 用途別 制限 • 수퍼·연쇄점의 酒類販賣 • 農·水協의 酒類販賣 • 都賣場 區分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免許의 利權化 ② 都賣場의 과점화에 의한 不公正去來 행위 발생 ③ 소극적인 서서비스 ④ 需要에 대한 각 地域別 都賣場數의 不合理 ① 일부 燒酎의 地域別 品貴現狀으로 소비자의 選擇權 制限 ② 燒酎의 品貴現狀을 이용한 웃돈거래 盛行 ③ 燒酎의 品貴現狀을 이용한 끼워팔기 盛行 ① 현실적으로 가정용의 遊興業所에서의 판매를 통제하기 어려움 ② 用途別 區分生產으로 인한 生產·販賣 상의 번거로움 ① 전체 賣出額 중 酒類 販賣額의 過度 ② 가정판매의 遊興業所로의 무자료 대량유출 ① 附價稅 免稅特惠를 이용하여 저렴한 가격에 販賣範圍를 벗어나, 都賣場 및 덤픽시장 등으로의 販賣行爲 ① 酒類流通體制의 二重化로 인한 二重去來, 輸送費 등의 불필요한 經費消耗 ② 國產洋酒都賣場과 一般酒類都賣場에서의 몇몇取扱酒類의 種類區分 모호
시장상황상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都賣業者의 自己資本脆弱 • 製造業體의 割引販賣와 獎勵金 支給 • 價 格 • 끼 워 팔 기 • 덤픽 행 위 • 出 庫 制 限 • 供 納 遲 延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과다한 外上買入에 의한 본의 아닌 製造業體의 예속화 ② 特定商標의 偏向 ① 판매촉진을 위해 도매업자에 대한 할인판매 및 과다한 金融支援으로 中小製造業體의 資金負擔 ① 流通價格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價格負擔 ① 人氣製品을 武器化하여 非人氣 製品을 強買 ② 強賣에 의한 非人氣 製品을 資金運用을 위하여 덤픽시장으로 流出 ① 각 酒類 都賣場에 資金運用을 위해서 덤픽市場이나 他市道 遊興業所에 제품 덤픽 ② 無資料去來로 인한 稅金脫水 ① 販賣業者間의 談合에 의해서 供給量의 임의 조절을 통한 價格上昇 ① 地域의 特殊性에 의해서 一部 都賣場의 경우 광활한 供給區域으로 인한 供給遲延

〈表III-5〉 주류소비시장의 문제점

구 분	문 제 점
소비제도적인 문 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알콜 중독 등 사회적 위험의 대책이 미흡하다 ② 현재 소주는 50% 자도주 구매의 문제로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③ 소주 및 수입 특급 위스키의 경우 생산량을 지정함으로 제품이 출고 가격보다 높은 프레미엄이 붙어 있다
시장상황적인 문 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비자의 음주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② TV드라마나 광고 등 사회가 음주를 조장하기도 한다. ③ 건전한 오락생활의 개발이 미비하여 음주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④ 알콜중독에 대한 연구단체의 부족, 전문가의 부족, 치료시설미비 등 효과적 치료의 기회를 부여하지 못한다

상황적 요인에 기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나타내면 〈表 III-4〉와 같다.

③ 소비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87년도 우리나라 주류 전체의 총출고가격은 1조 524,673백만원이고, 이중 맥주의 점유율은 42.8%로 가장 높으며 다음이 소주, 위스키, 탁주의 순이고 특히 맥주, 소주, 위스키, 탁주의 시장 점유율은 90%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주류소비가 날로 증가하는데 반해,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단체의 주류 소비자보호운동은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주류소비시장의 문제점은 정부의 통제, 지원미비에 의하여 발생한 소비제도적인 문제점과 소비시장의 주체가 되는 소비자 자신의 인식부족도 소비자 보호단체의 활동미비로 발생하는 시장상황적인 문제점으로 나눌 수 있다. (〈表 III-5〉 참조)

IV. 세계 주요국의 주류산업 관련정책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주류산업정책의 개편에 즈음하여, 참고하기 위하여 미국, 캐나다, 프랑스,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 이태리, 일

본 등 세계주요국의 주류에 대한 정책을 크게 국민보건을 목적으로 전체 주류 소비량의 적정선 유지와 주류간 소비량의 조정을 위한 각국정부의 주류산업 통제정책과 세원 확보를 위한 조세정책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주류산업 통제정책

세계 주요국의 주류산업 통제정책은 국민의 보건위생 측면과 세수확보측면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보건위생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류산업통제정책을 국가별로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1 주류전매제도

주류전매제는 국가별로 그 개입의 수준은 다르며, 프랑스와 스위스에서는 전매기관이 제조업자에게 알콜을 구매하여 이를 2차가공업자 또는 최종제품인 경우는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酒種에 따라서는 단지 증류주에 한하여 실시한다.

1.2 면허제도

일반적으로 주류의 판매면허를 취득해야만 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데 대부분 국가에서는 판매면허의 유형을 주류의 용도 및 소비장소에 따라 상이하게 면허제도를 두고 있으며 프랑스, 이태리, 영국에서는 인구비례로 판매면허를 허가한다.

1.3 판매일 및 판매시간 제한

각 국가별로 주류의 판매시간은 요일별, 지역별, 소비종류별, 주류종류별 등으로 규제하며 대부분의 경우 고알콜 주류가 맥주, 와인 등 저알콜 주류보다 규제가 심하며, 영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가장 엄격하다.

1.4 법적 음주허용 연령

주류의 구매 및 소비에 대한 법적 음주허용 연령은 미국이 21세로 가장 높으며, 프랑스가 14세로 가장 낮다. 또한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 유럽국가는 16세이며, 캐나다는 18~19세 일본 및 한국은 20세이다.

1.5 광고규제

주류의 광고는 대다수 국가에서 주류별, 매체별 등 다양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주요국가별 광고규제 내용은 〈IV-1〉과 같다.

1.6 혈중알코올농도 허용치

캐나다, 프랑스, 스위스, 영국 등은 0.08%이고, 일본과 네덜란드는 0.05%이며, 이태리는 혈중알코올농도 허용치의 기준이 없고, 한국은 0.1%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1.7 알콜중독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오늘날 서방 대부분의 국가에서 알콜중독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대책으로 알콜중독문제를 연구하는 연구단체를 설립운영하고 있고, 대학, 연구소, 알콜문제 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막대한 연구비를 제공하기도 한다.

2. 주류의 조세정책

세계 주요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류에 대

〈表IV-1〉 國家別 酒類廣告規制

廣告種類別 國家別	T. V광고	Radio광고	기타광고	비 고
미국				○ 종류주의 T.V, Radio廣告規制 ○ 맥주, 와인의 T.V, Radio廣告 부분적 許容
캐나다				○ 종류주의 T.V, Radio廣告規制 ○ 맥주, 와인의 T.V, Radio廣告 부분적 許容
프랑스	●			○ 종류주 Radio廣告 규제
스위스	●	●		○ 주류의 放送廣告 禁止
영국				○ 종류주의 T.V廣告 規制
네덜란드				○ 모든 주류 廣告 許容
이태리				○ 모든 주류 廣告 許容
일본				○ 모든 주류 廣告 許容
한국				○ T.V廣告는 10시 이후만 可能

※ ● 종류주 및 와인, 맥주 등 모든 酒類廣告 禁止

한 조세정책은 조세를 통하여 획득된 수입의 대부분을 국민복지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과 국민보건위생 차원에서 전체 주류 소비량을 감소시키거나 혹은 한 주류로부터 다른 주류로 소비패턴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통제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이들 국가의 주세는 일반적으로 소비세를 위주로 한 특별세와 국가별로 부가가치세, 총거래세, 판매세의 형태로 상이하게 부과되는 기타세로 구분할 수 있다.

V. 우리 나라 주류산업의 발전적 육성 과제

주류산업의 개편정책의 구상에 앞서 생각해야 할 정책입안의 철학은, 여타산업과는 달리, 주류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업의 육성, 통제, 자율화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좌표설정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주류산업의 발전적 진로 모색을 위해,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산업육성을 위한 과제

주류산업 육성적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课题는 政府의 정책적 배려에 의해 유도될 수 있는 정책적 산업육성 과제와 업계의 자율적 환경적응 의지에 의해 유도될 수 있는 자율적 산업육성 과제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1.1 정책적 산업육성 과제

정책적 산업육성 과제의 내용으로는 주류제조시설 기준의 보완정비, 기업의 전문화 유도, 기업경영내실화를 유도하고, 제품개발 시장화보능력육성, 정책주류의 육성 등 산업체질 강화와 정부의 주류산업에 대한 시각을 수정하여, 産業育成과 統制政策의 균형화가 이루

어지도록 노력하고 궁극적으로는 輸出指向의 인 대외경쟁력 있는 産業育成도모 등 산업육성 정책의 효과적 시행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정책적 산업육성은 산업육성을 위한 업체들의 체질, 즉 국제적 및 국내적 경쟁능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수립된 산업육성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대외수지흑자기조의 안정으로 선진국으로부터 수입개방압력이 날로 거세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별 생각없이, 주류시장쯤은, 포기해도 상관없다는식의 위험한 정책적 발상으로, 주류시장 개방속도 및 내용이 날로 빨라지고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에 의해, 우리나라 주류산업에 미칠 영향 등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분석해서 의사결정에 임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고급주 선호 추세가 가속화되는 소비추세를 감안해 볼 때, 만반의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의 시장개방은, 우리나라 주류산업의 몰락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적용 전의 고려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리고, 부득이해서 시장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도, 수입개방은 하되 실질적인 개방효과를 줄일 수 있는 방법과 명분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즉, 수입절차를 까다롭게 한다거나, 품질검사기준의 강화, 현지병입의 경우, 각종의 제도적 지원 강화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1.2 자율적 산업육성과제 : 업계풍토 정화 과제

우리 나라 주류산업 관련업체들은 他産業에 비해 기업공개, 인력활용면에 있어 公共性이 결여되어 있고, 탈세, 불공정거래 및 不法去來의 표본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실제적으로도 사회에 대한 위해요소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세우희의 경우에

도, 주류산업관련 부문 진출은 주류산업을 실제로 통제하고 있는 국세청을 모체로한 조직이기 때문에 사회의 많은 지탄을 받을 소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각 주류업체 및 주류산업관련단체들은 기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정부에 의한 타율적 통제에 의한 업계풍토 조성보다 업체 스스로의 기업윤리 재정립이 필요하고, 지역사회발전, 공해문제인식, 소비자보호 등 사회적 책임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2. 산업통제를 위한 과제

산업통제 정책은 산업육성 정책과의 균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대전제하에서 산업통제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공정거래 정책과제

2.1.1 면허제도

과거 주류업체 및 도매업자의 과잉 난립으로 인하여 주질저하, 과당경쟁이 빈발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면허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무한정 신규면허를 제한한다는 것은 공정거래 정신에 어긋남으로 원칙적으로 신규면허를 제한하기 보다는 사회환경과 경제규모의 변화에 따라 면허의 수를 조정,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면허제도의 개선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매면허는 면허의 수가 필연적으로 늘어나야 할 것이며, 이것은 인구와 예상 매출을 기준으로 한 증설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규면허를 부여할 때에는 면허자의 인품, 경력, 자본능력, 지역사회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이러한 자격을 갖춘 면허 신청자에 한해 공개추첨의 방식으로 면허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주류 제조면허는 급격한 제한 철폐보다는 기존업체가 자유경쟁 체질을 확보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주정제조면허는 면허의 개방은 신중한 고려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급진적인 개방을 피할 수 있는 명분으로 주정생산량의 일부를 공개 입찰하여 납품케 하는 방법 등 부분적인 경쟁개념의 도입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2.1.2 원료배정제도

주류업체에 대한 원료배정제도는 주정 생산량 및 원료의 배정, 주정공판제도, 주정가격 결정제도 등 주정업체 관련제도, 소주업체에 대한 주정배정제도, 위스키의 수입원료 배정제도 등 3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주정업체 관련제도

정부는 조세정책과 양곡수급정책상 주정업체에 대한 주정생산량 및 주정원료의 배정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개선을 위한 과제는 정부에서 종류와 수량은 지정하더라도 구입에 대한 업무는 각사 자율적으로 계획에 의거 시행하도록 하는 등 부분적 개편이 요구되며, 원료배정시기는 전년도 말까지 원료배정량을 확정하여 각 제조회사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주정공판제도의 전면적 폐지는 군소업체 및 주정단일업체의 경영난을 심각하게 하므로 세우회가 관장하고 있는 주정공판 기능을 보다 공공화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정가격 결정제도는 현재의 가격규제 제도를 어느정도 지속시키며, 가격산정제도는 기존 평균가격의 철폐보다는 주정공판회사에 대한 납품시 발효주정과 정제주정의 원가산정을 별도로 하여 구매가격을 결정하고, 공동판매시에는 전체 물량의 평균가격에 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다른 해결책으로는

정체주정 시설만 갖춘 업체에 발효주정 시설 투자의 균등화 유도로 업체간 불균형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다.

● 소주업체에 대한 주정배정제도

소주업체에 대한 주정배정제도의 대책으로는 신장분에 대한 기존시장 지분에 의한 배분, 신장분에 대한 균등배분, 배정제도의 철폐 등 3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3 가지 대책은 각 업체의 사정에 따라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으므로, 소주업체에 대한 주정배정제도의 기본방향은 전 소주업체들이 공존공영하고 나름대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위스키의 수입원료 배정제도

위스키 원액 수입 쿼터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수입위스키 원액사용 업체들의 체질을 강화시켜야 하며, 쿼터 증가분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분은 국산위스키 개발에 투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익차원이나 국산양주의 시장 정착을 위해서, 쿼터의 급격한 증가는 절대적으로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2.1.3 공급구역제한제도

공급구역제한제도는 소주의 자도주 50% 구매의무제도와 도매업자의 판매지역 제한제도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지방주 육성과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실시한 자도주 50% 구매의무제도는 지방소주업체의 장기간 보호로 경영안주의 현상이 심각해질수도 있으므로 구매의무비율은 50%→40%→30%로 낮추다가 자유경쟁체계에 진입하게 하던지, 보호대상 업체의 전국시장 점유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도매업자의 판매지역 제한제도는 지역제한의 완전철폐보다는 도매업자의 판매지역을 시·도단위로 점진적으로 광역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 조세정책 과제

2.2.1 주류분류제도

현재 주류분류체계는 양조주, 증류주, 재제주로 대별되고 있는데 이것을 가능하면 프랑스식으로 각 주류별 알콜도수, 수입여부에 따라 1종~5종으로 분류하여 세부적으로는 국제적 분류체계 및 주류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하며 위스키 및 브랜디의 등급 분류는 원액함유 비율에 따라 특급,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여 차등과세함으로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2.2.2 주세율 및 주세부과 방법

지금까지 특이한 구조로 적용되어온 주세율은 전면적인 개편보다는 조심스럽게 검토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주세율 개편에 앞서 산업체질 및 구조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주세부과방법은 우리 나라 주류산업 국제화를 도모하면서 외국주류의 자유로운 시장 지배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종량세와 종가세를 병용할 필요성이 있다.

2.3 소비자 보호과제

주류의 소비자보호 과제는 알콜센타, 전문가 양성, 기금조성, 민간단체에 의한 자금지원 등 종합적인 알콜관련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주도강좌, 올바른 주류문화 창달, 오락 문화개발 등 업체 및 사회공공 단체의 건전한 주류풍토조성, 마지막으로 주류남용에 따른 각종 부작용의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3. 산업자율화를 위한 과제

3.1 협회기능 개발 과제

협회기능 개발 과제는 전체 주류산업 발전을 위해 회원사 및 주류산업 관련단체들을 통합·조정하는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율적이고

폭넓은 업무를 담당하는 협회기능의 자율화 및 업무영역 확대, 전체 주류업체들의 회원사화, 주류통계센타 설치, 시장조사부 설치, 공동기술연구소 설치, 수출지원부 설치 등 협회의 산업주도적인 기능의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협회와 대외관련기관들과의 관계는 비공식 단계에서 벗어나 공식적인 업무 연락체계로 변해야 하며, 일반 국민에게 건전한 주류문화 창달을 인식시키는데에 협회가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

3.2 업계자율조정 과제

우리 나라의 주류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지나친 보호와 통제로 일관되어 왔기 때문에 업체의 자율적 발전능력 개발을 상당히 저해하여 왔음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주류업체들은 자율적으로 기업,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주류업체의 자율조정과제는 경쟁조정, 사회활동, 기술개발 등의 차원에서 더욱더 성숙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동종주류제도업체들간의 공동기술교류, 품질관리 필요성이 크다.

VI. 우리 나라 주류산업의 발전적 개편방안

1. 개편의 기본방향

수십년간을 관주도 형태의 산업정책을 적용해 온 주류산업의 경우 기존의 시장제도와 질서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하고자 할 때 개편의 기본방향 설정 필요성은 비교적 자유롭게 발전해온 타산업에 비해 더욱 크다.

따라서, 기존주류산업을 발전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설정할 수 있는 개편의 기본방향은 기존산업 조직체들이 균형발전하여 공존공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점차적으로 강화되어 갈 경쟁개념의 도입에 따른 산업내 충격

을 최대한 완화하고, 점진적 개편이 실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울러 '관주도형'의 산업통제로 충분히 개발, 발전되지 못했던 산업자율화 기능이 조속한 시일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서 자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실천적 개편 모형

2.1 공통적 개편 내용

● 주류의 분류체계 개편

각 주류별 알콜도수 및 수입여부에 따라서 1종~5종으로 분류하는 프랑스식 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 주세 부과방법

전략적으로 종가세와 종량세를 병용하여 적용한다. 예를 들면, 위스키, 브랜디등 수입 가능한 고알콜주류에는 종가세를 적용하고 그 이외의 주류에는 종량세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 도매업자의 판매지역 제한제도

도매업자의 판매지역을 시·도단위로 점진적 광역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수퍼·연쇄점에 대한 주류 공급제도

유통업소 등에 대한 수퍼·연쇄점용 주류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아울러 수퍼·연쇄점 자체에서도 자율적인 물량조절이 요망된다.

● 도매면허의 신규접입제한 제도

인구와 매출실적이 일정수준을 넘는 기존도매장 소재지역에 대해년차적으로 면허장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체적 방법으로는 89년 100개, '90년 100개, '91년 100개로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제품의 포장, 용기, 상표 등의 규제

용량규제의 전면 폐지 및 수출용만이라도 우선 폐지하여 용량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포장

개선시 비용 증가분을 가격에 반영토록 하여 포장개선을 실시하고, 상표규제는 폐지하여 상표법에 의한 규제로 일원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2.2 양조주

2.2.1 맥주

- 제조면허 : 맥주 제조면허는 점진적으로 개방하여 최소한 3~4개의 신규면허 업체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 한다.
- 소요원료 지정제도 : 기본적인 주원료만 지정하고 기타 원료는 자율화 시킬 수 있다.
- 주세율 : 국내 주류에 대해서는 종가세로 전환하고 수입 주류에 대해서는 종량세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2.2.2 청주

- 주세율 : 최근에 대중주로 소비패턴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주세율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
- 알콜도수 : 12~20°로 다양화 하여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힐 수 있다.

2.2.3 과실주

- 과실주의 정의 : 과실주의 다양성을 위하여 포트와인, 베르스와인, 스위트와인, 스파클링와인 등을 과실주의 정의에 삽입하여 과실주의 종류를 확대할 수 있다.
- 수입개방정책 : 관세정책으로 국내 과실주 업계가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아울러 수입면허권이 없는 중견제조업체들에게도 수입면허권을 부여하며, 국산제조기술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2.2.4 탁, 약주

- 제품표시 : 제품특성상 변질의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조일자 혹은 저장기관등의 명시를 강화하고, 도매업자의 판매지역

이외의 유출을 강력히 막아야 한다.

2.3 종류주

2.3.1 주정

- 제조면허 : 부분적 경쟁개념의 도입 즉, 주정 생산량의 일부를 공개입찰하여 납품케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 생산량 및 원료의 배정 : 원료구입에 대한 업무는 각사 자율적으로 계획에 의거 시행하도록 하거나, 국산원료의 사용은 의무화 하고 수입조주정은 각사 자율적으로 구입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원료 배정시기는 전년도말까지 확정하여 각 업체에 통보하도록 한다.
- 주정공판제 : 기능의 공공화가 바람직하다.

2.3.2 소주

- 주정배정제도 : 신장분에 대한 시장지분에 의한 배분, 신장분에 대한 균등배분 및 배정제도의 철폐등 세가지 방법 중에서 기존 소주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 제조면허 : 공정거래 차원에서 신규참입제한은 점진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
- 자도주 50% 구매의무제 : 구매비율을 50%→40%→30%로 점진적으로 낮추거나, 보호대상업체의 전국시장 점유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현행 10%에서 연차적으로 7%→5% 등으로 낮추어 자유경쟁체제에 진입하도록 할 수 있다.
- 알콜도수 : 20°~30°로 규정을 확대할 수 있다.
- 관광용 소주의 판매업소 : 정부지정 모범업소 및 전통음식점, 백화점, 골프장까지 확대 실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2.3.3 위스키

- 위스키 급별 조정 : 수입원액사용 위스키 또

는 수입완제품과 국산 위스키를 제도적으로 차별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시급하고 위스키의 등급분류는 <表 VI-1>과 같이 특급, 1급, 2급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표VI-1> 위스키의 등급분류

특급	1. 위스키 원주가 50% 이상 혼합된 것 2. 알콜도수가 43 이상의 위스키
1급	1. 위스키 원주가 30% 이상 혼합된 것 2. 알콜도수가 40 이상으로서 특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
2급	1. 위스키 원주가 20% 미만 혼합된 것 2. 위스키 중 특급 및 1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

- 알콜도수 : 35~45°로 가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 수입원료배정제도 : 위스키의 수급안정 및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액수입 퀴타 제도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 주세율 및 주세부과방법 : 정책주류로서 일반 주류와 차등 분류하고, 외국의 수입 주류와

도 차등 분류할 필요가 있으며, 주세부과방법은 종가세 유지와 수입 위스키에는 종가세, 국산 위스키에는 종량세를 적용하는 혼합형도 고려될 수 있다.

2.3.4 브랜디

원주저장기간은 단식증류 3년이상, 연속식증류 1년이상으로 조정하고, 주세율 및 주세부과방법은 위스키와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브랜디의 경우 위스키와는 달리 외국원액 국내병입 경험이 없으므로, 수입개방전 국내병입을 일정기간 유도할 필요가 있다.

2.4 재제주

2.4.1 기타재제주

현재 진, 럼, 보드카 등의 주류가 기타재제주에 포함되고 있으나 이를 새로운 주류로 신설해야 한다.

2.4.2 인삼주

인삼주를 정책주류로 분류하여 일반주류와의 주세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3. 단계적 실천내용

核 心 的 實 践 內 容	
3.1 第1段階： 産業體質 強化期 (1988~1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製品 分類體制改編 • 一般 酒類 都賣免許의 漸進的 開放 • 都賣業都 販賣地域 廣域化 • 수퍼·연쇄점 酒類供給制限制度 確立 • 製品 包裝, 容器, 商標의 自由化 • 酒稅의 從價稅, 從量稅, 混用 制度化 • 協會 活動의 自律權 保障 • 新規 麥酒 業體의 市場參與 誘導 • 傳統酒, 政策 酒類의 育成 對策 마련 • 燒酎의 自道酒 50% 義務購買制의 漸進的 緩和 • 위스키, 브랜디 分類體系 改編 및 等級別 稅率調整

<p>3.2 第 2 段階： 部分競爭 導入期 (1991～199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洋酒類 都賣免許의 漸進的 開放 • 製造業 新規免許 制限 緩和 • 酒稅率의 전반적인 調整 • 酒精 共販機能의 公共化 • 酒精 生產量 및 原料配定制度改編
<p>3.3 第 3 段階： 完全自由 競爭期 (199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酒類價格 自律化 • 酒精 生產量 및 原料 配定 制度 廢止 • 酒精 價格自律化

VII. 결 론

본고의 내용이 진정한 의미로 각 분야에서 이해되고,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자 할 때 정책입안자들이 가져야 할 산업개편의 기본적인 시각은 다음과 같

은 관점에서 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점진적 개편에 따른 업계의 체질강화
- 선진국과 같은 다수의 공존공영시스템 구축
- 업계의 자율적 통제 및 산업조정 능력 개발
- 대외시장개방에 대한 전략적 대응

온서적 순유인물 신고하여 뿌리뽑자